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채무자회생법·채권추심법 상의 추심금지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Prohibition Against Debt Collection and Effect of Reaffirmation Agreement

정 건 희*
Geonhui Jeong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 |
| II. 면책채무 지급약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 | IV. 결론 |

명문으로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캐나다·일본처럼 법원의 해석을 통해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을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법의 목적·면책의 취지·파산자의 이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단순히 법의 목적을 거론해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상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과 관련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의 논리적·체계적 해석을 통해 두 법이 금지하고 있는 추심행위의 범위를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및 채권추심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추심금지의 구체적 범위·채권자의 사익·면책의 정당성·추심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추심금지조항은 효력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에 반해 효력이 없다.

[주제어] 채무자회생법, 채권추심법, 면책, 면책채무 지급약정, 강행규정

<https://doi.org/10.35148/ilsilr.2021.49.369>

투고일: 2021. 7. 27. / 심사외일: 2021. 8. 9. / 게재확정일: 2021. 8. 27.

* 법률사무소 도연, 변호사

Lawyer, Law Office of DOYEON

I. 서론

채무자가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를 거쳐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권자와 별도의 약정으로 면책채무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하 ‘면책채무 지급약정’이라 한다), 그 약정의 효력이 문제 된다.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목적뿐만 아니라 면책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면책채무 지급을 재차 약정할 현실적인 필요성과 채권자의 이익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유효성이 논의되고 있다.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유효성과 그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연방파산법과 달리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이나 면책의 취지, 채무자의 이익 등을 전면에 내세워 면책채무 지급약정이 무효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이 단순히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채무에 대한 추심금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그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3항). 또한 채권추심법 역시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된 채무에 대한 추심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3의2호 및 제4호, 제17조 제3항). 이러한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상의 추심금지조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면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채무자회생법 및 채권추심법상의 추심금지조항과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 간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다. 먼저 면책채무 지급약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목차 II). 그리고 추심금지조항이 금지하는 추심행위의 범위를 검토하고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을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과 관련해 논증한다(목차 III).

II. 면책채무 지급약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

1. 비교법적 분석의 필요성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걸쳐서 채무자의 면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다음으로 개인파산절차에서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위와 같은 면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면책채무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 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이미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미국처럼 입법을 통해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캐나다나 일본처럼 축적된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예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통합도산법인 채무자회생법이 2006년 시행되어 그 역사가 비교적 짧아 비교법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미국·캐나다·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판례와 여러 논의에 대해 검토한다.

2. 외국의 사례

2.1 미국

미국 연방파산법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 면책채무 지급약정¹⁾의 효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²⁾ 그러나 미국 역시 처음부터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적인 시도까지 있었

1) 미국연방파산법상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Reaffirmation Agreement 즉, 재승인 약정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재승인 약정을 면책채무 지급약정으로 부르기로 한다.

2) 미국의 연방파산법상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유효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영수, “소비자도산제도의 변화- 미국과 한국의 법개정 검토-”, 법조 제55권 제4호, 법조협회, 2006, 179-180쪽.

다.³⁾ 결국, 미국은 여러 논의 끝에 담보물의 소유·비면책채권에 관한 다툼의 해결·보증인의 부담 경감 등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에 관한 논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⁴⁾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르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 체결한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 등 연방파산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둘째로 채무자는 채권자와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확인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소득·지출·가용소득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는 지나친 어려움(undue hardship)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서면에 서명하여야 한다. 셋째로 채무자의 면책 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넷째로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 이전 또는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법원에 제출한 이후 60일 이내에 채무재승인 약정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채무자는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채무자의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대리하면 일정한 내용의 확인서만을 제출하면 된다. 반면 채무자가 변호사의 대리 없이 직접 채권자와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를 소환해 그 취지를 고지한 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2 캐나다

캐나다는 1919년 The Bankruptcy Act라는 통일적인 파산법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1992년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이른바 BIA)로 법명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퀘벡주의 대륙법 전통과 나머지 9개 주의 영미법 전통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미법 국가인 미국과 다른 특색이 있다.⁵⁾ 즉 캐나다의 파산법은 미국과 달리 면책채무 지급약정에 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은 법원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⁶⁾

캐나다 법원은 Seaboard Acceptance Corp. V. Moen 사건에서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3) 송재우, “면책제도에 관한 소고-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60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9쪽.

4) 김성용/임치용, “도산감독기능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1, 4쪽.

5) 김성용/임치용, 위의 보고서, 36-37쪽.

6) 캐나다의 면책채무 지급약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송재우, 앞의 논문, 40-41쪽.

효력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위 사건은 파산절차 중에 있는 채무자가 리스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리스료까지 납부한 뒤에 면책결정을 받자, 채권자가 리스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에게 미지급 리스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캐나다 법원은 위 사건에서 채무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이 유지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캐나다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단순히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그 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3 일본

일본 역시 파산법에서 면책채무 지급약정에 관해 규율하지 않는 결과 법원이 그 효력을 판단하고 있다.⁷⁾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면책허가결정 이전에 면책채무 지급을 약정한 사안에서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준소비대차계약으로 면책결정으로 실효된다”라고 보았다.⁸⁾ 또한 요코하마지방법판소는 “면책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새로운 이익 없이 면책채무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 무효다”라고 판시하였다.⁹⁾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채무자가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을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자유재산은 본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변제에 조금이라도 강제적 요소가 있다면 임의성을 결하여 채권자의 부당이득이 된다”라고 본 사례가 있다.¹⁰⁾

3. 우리나라의 경우

면책의 효력에 관해서 자연채무설과 채무소멸설의 대립이 있다. 자연채무설은 면책결정으로 채무 아닌 책임만이 소멸한다고 보는 반면 채무소멸설은 채무 그 자체가 소멸한다고 한다.¹¹⁾ 대법원¹²⁾과 헌법재판소¹³⁾는 면책의 효력에 관해 구 회사정리법부터

7) 일본의 면책채무 지급약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재완, “채무재승인약정”,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386-390쪽.

8)名古屋地方裁判所 昭和 55. 12. 12. 判決.

9) 横浜屋地方裁判所 昭和 63. 2. 29. 判決.

10) 日本 最高裁判所 2006年(平成 18年) 1月 23日 民集 60卷 1号 228項.

11) 면책의 효력 및 채무소멸설이 타당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건희, “비면책채권과 소송 및 집행절차”, 법조 제70권 제3호, 법조협회, 2021, 130-138쪽.

현재의 채무자회생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연채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채무설에 따르면 면책채무는 소구력과 집행력만을 상실할 뿐 여전히 그 법적 의무의 기초로서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을 가진다. 그럼에도 하급심은 면책결정의 전¹⁴⁾·후¹⁵⁾를 불문하고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¹⁶⁾ 즉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이나 면책제도의 취지, 파산자의 이익을 고려하였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자연채무설과 배치되어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여러 학설이 분분하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먼저 면책의 효력에 대해 채무소멸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면책결정으로 채무 그 자체가 소멸한 이상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¹⁷⁾ 반면 자연채무설의 견지에서도 법적 의무의 기초로서 자연채무 그 자체는 존속하더라도 면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¹⁸⁾ 그러나 담보물의 계속 사용·면책 후 여신거래 등 채무자가 면책채무의 지급약정을 원하는 특수한 경우를 전제하며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¹⁹⁾

한편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무효로 보는 근거를 면책규정의 강행규정성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²⁰⁾ 즉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면책의 포기에 다름아니어서 면책조항의 강행규정

12) 대법원 1969. 4. 22. 선고 68다1722 판결; 대법원 2001. 7. 24.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13) 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3헌바5·58결정;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가15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0. 31. 2001헌바59 결정;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마47 결정.

14) 파산선고 후 면책허가 결정 확정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파산채권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가 지급을 약속한 그 새로운 채무에도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전주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나3470 판결).

15) 파산자의 면책규정은 면책에 의한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자가 새로운 이익획득을 위해 구 채무도 함께 처리한다는 사정도 없이 채권자의 지급요구에 대해 단순히 구 채무의 지급약속을 하고 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지연시킬 뿐 파산자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으므로, 면책 후 지급약속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전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나16641 판결).

16) 권순일, 주석 채무자회생법(V) 제1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566쪽.

17) 김정만, “파산면책의 효력”, 사법논집 제30집, 법원도서관, 1999, 214-215쪽 및 217쪽.

18) 김정만, 위의 논문, 215쪽 및 217-218쪽;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중판, 박영사, 2019, 250-251쪽.

19) 송재우, 앞의 논문, 11-18쪽.

20) 박재완, 앞의 논문, 392쪽.

성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의 효력에 관해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제566조 본문, 제625조 제2항 본문). 즉 법문상 강행규정의 근거가 되는 금지의무를 곧바로 도출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비교법적으로 면책조항이 당연히 강행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다. 반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책채무를 추심하기 위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채권자의 추심금지의 범위에 포섭되므로 추심금지조항을 통해 그 효력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면책조항의 강행규정성을 근거로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4. 소결

미국과 달리 면책채무 지급약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결국 해석을 통해 그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캐나다의 사례는 채무자의 단순 이행만으로도 면책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또한 일본은 우리와 달리 채권추심에 관한 일반법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즉 일본은 채권추심에 관해 특정 업종만을 규제하는 개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²¹⁾

그렇다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을 판례와 같이 파산자의 이익이나 면책의 취지만을 거론하여 가볍게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조항은 책임 면제에 관해 선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 면책조항을 근거로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을 곧바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보다는 채무자회생법 및 채권추심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채무의 추심금지조항을 통해 그 지급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추심금지조항이 강행규정이라면 이에 위반한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효력이 없다. 항을 바꾸어 자세히 살펴본다.

21) 김태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통권 제463호, 대한변호사협회, 2017, 81쪽.

III.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

1. 추심금지의 범위와 성격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책채무에 대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3항). 그럼에도 채무자회생법은 금지되는 추심행위를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금지되는 추심행위의 범위가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한정되는지 즉, 면책채무 지급약정이 추심금지의 범위에 포섭되는지 문제 된다. 아울러 추심금지조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면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추심금지조항이 과태료 부과를 전제로 한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법상 효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효력규정인지 살펴본다.

2. 추심행위 금지의 범위

2.1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추심행위는 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국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위해 신속하고 간소한 법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채권추심법은 위와 같이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채권추심법 제1조).²²⁾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법이 정하는 바에

22) 채권추심법의 연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영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해설”, 법조 통권 641호, 법조협회, 2010, 282-285쪽.

따른다(채권추심법 제4조). 결국 채권추심법과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채무의 추심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즉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채무에 대한 추심금지조항의 해석은 채권추심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채권추심법에 의한다.

2.2 추심행위 금지의 구체적 범위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3항). 이때 금지되는 추심행위의 범위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한정되는지 즉 추심금지의 범위를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법문의 형식과 과태료 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채무자회생법상 추심금지의 범위를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²³⁾ 즉 법문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가 아닌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방법으로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추심금지의 범위는 위 세 유형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추심금지의 범위가 과태료 부과 전제가 되는 이상 징벌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확장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한다. 물론 과태료 부과의 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²⁴⁾ 그러나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²⁵⁾ 즉 과태료 부과 조항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엄격한 해석을 요하지만 형벌 조항 수준으로 그 해석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²⁶⁾

한편 법문의 해석은 중국적으로 법문으로부터 출발하여 법을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법획득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법문의 의미를 그 문언의 범위 내에서 찾아내는 법발견과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법률의 흠결이 있는 경우 법관이 이를 보충하는

23) 임채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비면책채권의 범위 및 면책 후 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89호, 2006, 52-57쪽.

24)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25)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83 결정.

26)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균성, 행정법 강의 제17판, 박영사, 2020, 415-420쪽.

법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발견은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인 문리적 해석·논리적 및 체계적 해석·입법자의 의도에 기한 해석·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법형성은 유추나 목적론적 축소의 추론 방식이 사용된다. 법발견과 달리 법형성은 법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의 정당성이 요구된다.²⁷⁾

다만 판례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²⁸⁾라고 판시하여 법발견과 법형성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에 관한 일반법이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상 추심행위 금지의 구체적 범위는 채권추심법의 내용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채권추심법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한 행위로써 금지의 대상이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의 2).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주관적 요건을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객관적 요건은 다르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채무에 한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그러나 채권추심법은 면책채무 이외에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채권추심법의 규제 범위가 채무자회생법보다 더 넓다.

27) 김영환,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법철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5, 143-150쪽.

2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한편 채권추심법은 유독 채무자회생법과 관련된 추심금지의 범위에 관해 ‘법령’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채권추심법이 목적·정의·다른 법률과의 관계·손해배상책임·과태료 권한의 위임 조항에 걸쳐서 ‘다른 법률’ 또는 ‘이 법’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것과 명백히 구분된다(채권추심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8조 제1항). 그렇다면 채권추심법상 추심금지의 범위는 채권추심법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법령인 채무자회생법도 함께 고려해 해석하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²⁹⁾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동일한 면책채무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면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이 면책채무에 대한 추심행위에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구분의 실익이 없다. 따라서 면책채무에 대한 추심금지의 구체적 범위는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해석은 법문의 의미를 다른 법률과의 논리적 관계에서 찾아내는 법발견에 불과하여 당연히 허용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서 금지하는 추심행위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한정적 열거 조항이 아닌 예시적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³⁰⁾ 즉 면책채무에 대해 금지되는 추심행위의 구체적 범위는 채무자회생법상의 강제집행 등 외에도 채권추심법상의 변제요구·수임사실 통보·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대리인 선임 시 연락금지·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소송행위의 금지·폭행 및 협박 등의 금지·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의 광범위한 규제³¹⁾를 포함한다.³²⁾

2.3 소결

개인회생절차 내지 면책채무에 대한 추심금지의 범위를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

29) 논리적·체계적 해석은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문 외에도 법체계 전체를 고려한 논리적 해석방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학태, “법률해석의 한계”, 외법논집 제2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85-188쪽.

30)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한 방법 외로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행위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로는 전병서, 도산법 제4판, 박영사, 2018, 455쪽; 노영보, 도산법 강의 초판, 박영사, 2018, 479쪽.

31) 채권추심법이 규제하는 행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태선, 앞의 논문, 85-92쪽.

32) 하급심 판례 중에는 면책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가합100354 판결).

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입법론적으로 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심행위 금지의 범위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각 법률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 현행 법률 아래에서는 법률해석의 방법론을 활용해 그 범위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본다. 그리고 면책채무 지급 약정은 두 법률이 규정한 추심금지의 범위에 포섭돼 당연히 규제의 대상이 된다.

3.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

3.1 효력규정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

강행규정이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말한다(민법 제105조). 통설과 판례는 강행규정을 이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과 일정한 행정상 제재가 따를 뿐인 단속규정으로 구분한다.³³⁾ 반면 강행규정을 단속규정과 대별하여 단속규정 내에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효력규정과 행정상 제제만 따르는 단속규정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다.³⁴⁾ 생각건대, 법령에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유효·무효는 결국 해석의 문제에 불과해 그 구분의 실익이 없다. 따라서 강행규정에 단속규정이 포함된다고 본다.

한편 법령 중에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만 있는 경우 그에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해석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및 채권추심법상의 추심금지조항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추심금지조항에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효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효력규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효력규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법문에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그에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판단하

33) 곽윤직,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21, 274-275쪽.

34) 이영준, 민법총칙 개정정보판, 박영사, 2007, 215쪽.

면 족하다. 그러나 법문에서 금지규정 외에 별도로 사법상 효력에 관해 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 유무의 판단은 법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전형적인 법해석 영역을 벗어난다. 즉 법관은 금지규정에 따른 형사적·행정적 제재 외에도 과연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법관은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일종의 법형성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법해석과 달리 법형성은 법문의 문언을 벗어나는 법획득 과정이므로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를 요한다. 그 구체적 판단기준은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2009년 유럽민사법의 통일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이른바 공통참조기준초안을 발간하였다.³⁵⁾ 공통참조기준은 사적 자치의 원칙의 한계를 설정하는 이른바 계약의 내용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강행규정에서 사법상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강행규정에서 금지규정 외에 별도로 사법상 효력에 관해 규정하지 않으면 법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그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때 법관이 고려해야 하는 제반 사정은 강행규정의 취지·강행규정의 수범자의 범위·제재 규정·위반의 경중·고의 위반 여부·위반과 계약 간 관계 등이 거론된다. 법관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돌리거나 수정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은 민법 제134조에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그 법률로부터 달리 해석되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³⁶⁾ 그러나 독일 역시 민법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 즉 입법목적·문언의 표현·수범자의 수·금지규정이 내용적 금지인지 외부적 상황에 대한 금지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내용 금지와 외부적 상황에 대한 금지는 금지규정이 수입금지와 같이 계약내용을 금지하는지 아니면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처럼 시간이나 장소를 금지하는지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판례는 법해석과 법형성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법원은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35) 공통참조기준초안의 내용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진우,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 따른 계약의 내용통제”, 법학논고 제38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21-223쪽.

36) 독일의 금지규정 위반의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수정,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기준에 관한 체계화 모색”, 민사법학 제85권, 한국민사법학회, 2018, 26-33쪽.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³⁷⁾

대법원이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재산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그 재산을 처분한 것은 무효이다.³⁸⁾ 다음으로 구 임대주택법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임차인의 자격·선정 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그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다.³⁹⁾ 마지막으로 대외무역법이 수입금지품목을 공고하여 국내반입을 불허하는 취지는 국내조선업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고 그 공익적인 요청의 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당사자 간 약정은 당연히 무효이다.⁴⁰⁾

생각건대 채권자와 채무자 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약정의 효력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를 시작점으로 하여, 금지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해관계자들의 사익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분명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3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과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

추심금지조항은 추심행위에 대한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추심금지조항은 효력규정에 해당해 그 위반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먼저 채무자 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갹생을 목적으로

37)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38)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39)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40)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617 판결.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그리고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의 규제를 통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채권추심법 제1조).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가 채무자 보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추심금지조항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면책채무를 추심하거나 그 급부를 보유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의 논리적·체계적 해석에 의할 때 추심금지의 구체적 범위는 채무자회생법상의 강제집행 등 외에도 채권추심법상의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등 추심행위 전반에 걸쳐 있다. 추심금지의 광범위한 규제는 단지 과태료를 통한 행정 제재만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법상 행위의 효력도 부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회생절차·개인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를 마친 채무자는 잔여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제566조 본문, 제625조 제2항 본문).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책으로 이미 실권하여 추심금지조항에 위반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더라도 달리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로 면책은 소비자금융을 통해 경제의 발전을 목적하는 국가적 측면·채권자가 최소한 청산가치라도 보장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손해가 없다는 채권자의 측면·채무자를 갹생해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채무자의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다.⁴¹⁾ 면책이 이처럼 정당하다면 이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은 부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면책의 효력에 관해 책임만이 소멸하여 자연채무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²⁾ 그러나 추심금지조항은 면책채무의 청구력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므로 자연채무설과 조화롭게 해석하기 어렵다. 채무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채무소멸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채무소멸설에 따르면 추심의 기초가 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⁴³⁾ 마지막으로 판례는 이미 면책 결정 전⁴⁴⁾·후⁴⁵⁾를 불문하고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무효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추심금지조항을 효력규정으로 보더라도 새삼스레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

41) 면책의 정당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경환, “파산면책의 정당화 근거 및 개인도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법조 제68권 제5호, 법조협회, 2019, 244-250쪽.

4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마47 결정.

43) 채무소멸설의 입장에 서더라도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해 오히려 그 약정이 유효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반론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는 면책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결과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44) 전주지방법원 2013. 7. 26. 2013나3470 판결.

45) 대전지방법원 2012. 12. 12. 2012나16641 판결.

결국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효력규정인 추심금지조항에 반해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면책채무 지급약정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전·후 언제 체결되었는지와 관련 없이 적용된다. 즉 면책결정 이전에 체결한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그 채권의 동일성으로 인해 면책결정으로 인한 추심금지의 범위에 포섭돼 실효된다. 그리고 면책결정 이후에 체결한 면책채무 지급약정 역시 효력규정인 추심금지조항에 반해 그 효력이 없다.

3.4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예외적 필요성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일반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하면서도 담보물의 계속 사용·면책 후 여신거래 등 채무자가 면책채무의 지급약정을 원하는 특수한 경우를 전제하며 그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⁴⁶⁾ 그러나 추심금지조항이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이상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즉 추인할 수 없고, 표현대리의 규정을 적용해 그 위반행위를 유효로 해석할 수도 없다.⁴⁷⁾ 또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며 예외를 인정할 수도 없다.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행 전에는 이행할 의무가 없다. 결국 면책채무 지급약정이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에 위반돼 무효인 이상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 채무자는 면책채무 지급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 전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기 급부한 것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3.5 소결

추심금지조항은 채권자가 면책된 채무에 대해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달리 그에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및 채권추심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추심금지의 구체적 범위·채권자의 사익·면책의 정당성·추심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추심금지조항은 효력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6) 박재완, 앞의 논문, 392-394쪽; 송재우, 앞의 논문, 44-48쪽.

47)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IV. 결론

미국 연방파산법은 여러 논의 끝에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명문으로 도입함으로써 입법적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캐나다와 일본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그 해결을 꾀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면책채무 지급약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효력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법원은 면책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그 근거로 법의 목적·면책의 취지·파산자의 이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단순히 법의 목적을 거론해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과 관련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채무자회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면책채무의 추심금지조항은 채권추심법과 통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및 채권추심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추심금지의 구체적 범위·채권자의 사익·면책의 정당성·추심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추심금지조항은 효력규정에 해당한다. 결국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반해 효력이 없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곽윤직,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21.
- 권순일, 주식 채무자회생법(V) 제1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 노영보, 도산법 강의 초판, 박영사, 2018.
- 박균성, 행정법 강의 제17판, 박영사, 202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박영사, 2019.
- 이영준, 민법총칙 개정증보판, 박영사, 2007.
- 전병서, 도산법 제4판, 박영사, 2018.

2. 학술지

- 김수정,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 기준에 관한 체계화 모색”, 민사법학 제85권, 한국민사법학회, 2018, 3-38쪽.
- 김영환,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법철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5, 133-166쪽.
- 김정만, “파산면책의 효력”, 사법논집 제30집, 법원도서관, 1999, 191-247쪽.
- 김진우,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 따른 계약의 내용통제”, 법학논고 제38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09-250쪽.
- 김태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통권 제463호, 2017, 78-87쪽.
- 김학태, “법률해석의 한계”, 외법논집 제2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77-206쪽.
- 서경환, “파산면책의 정당화 근거 및 개인도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법조 제68권 제5호, 법조협회, 2019, 240-280쪽.
- 송재우, “면책제도에 관한 소고 -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60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31-52쪽.
- 임채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비면책채권의 범위 및 면책 후 추심행위의

- 금지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89호, 한국법학원, 2006, 35-57쪽.
- 정건희, “비면책채권과 소송 및 집행절차”, 법조 제70권 제3호, 법조협회, 2021, 122-154쪽.
- 정영수, “소비자도산제도의 변화- 미국과 한국의 법개정 검토 -”, 법조 제55권 제4호, 법조협회, 2006, 169-202쪽.
- _____,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해설”, 법조 통권 641호, 법조협회, 2010, 281-306쪽.

3. 기타 자료

- 김성용/임치용, “도산감독기능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1, 1-83쪽.

[Abstract]

Prohibition Against Debt Collection and Effect of Reaffirmation Agreement

Geonhui Jeong*

Unlike the U.S., which stipulates the effect of the reaffirmation agreement by law, Korea judges effect of the reaffirmation agreement through court interpretation, as in the case of Canada and Japan. The court also denies the effect of the reaffirmation agreement, suggesting the purpose of the law, the intent of the immunity, and the interests of the bankrupt. However, the reaffirmation agreement signed by creditors and debtor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annot be nullified simply by citing the purpose of the law.

The effect of the reaffirmation agreement needs to be interpreted in relation to the compulsion of the prohibition against debt collecti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A logical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shows that the scope of collection acts prohibited by the two laws needs to be interpreted integrally.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urpose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the specific scope of prohibition against debt collection, creditors' private interests, justification of immunity, and the legal stability, the prohibition against debt collection is a validity rule. Therefore, the reaffirmation agreement is invalid in violation of the compulsion of the prohibition against debt collection.

[Key Words]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Immunity, Reaffirmation Agreement, Compulsory Provisions

* Lawyer, Law Office of DOYEON